

다니엘청년부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동명교회 다니엘청년부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동명교회(이하 본 교회) 교육부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 교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및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적극 힘쓰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며 신앙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강령) 본회는 다음과 같은 강령을 둔다.

하나. 예수제자로 부름 받은 우리는 모든 젊은이들을 예수제자 삼고 세상을 변혁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 우리의 신앙원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하나님중심
- ② 성경중심
- ③ 교회중심

제2장 예 배

제5조(예배)

- ① 매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린다.
- ② 세대통합 / 연합예배 등의 형태로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 정회원은 전년도 총회 이후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3개월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 ② 소그룹 모임에 출석한 자라 함은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양육 소그룹 모임에 등반한 자를 말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 준수, 집회 출석, 회비 납부 및 기타 본회의 결의 사항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조 직

제9조(조직) 본회는 조직관리 및 활동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지도자그룹 : 지도장로, 지도목사, 전도사(및 전임 간사),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국

1. 회장: 1명 (2청)
2. 부회장: 1명 (1청)
3. 총무: 2명 (1,2청)
4. 서기: 2명 (1,2청)
5. 회계: 2명 (1,2청)

③ 사역국 : 사역국은 사역의 특수성과 부서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각팀은 팀장 이하 팀원을 둘 수 있다.

1. 예배팀장/부팀장: 2명
2. 전도팀장/부팀장: 2명
3. 미디어팀장/부팀장: 2명
4. 새가족팀장: 2명(1,2청 각 1명씩)
5. 중보기도팀장/부팀장: 2명
6. 양육훈련팀/부팀장: 2명

④ 양육국 : 간사, 엘더, 리더

⑤ 임명

1. 지도자그룹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2. 회장단을 제외한 임·역원은 세례교인으로서 2년 이상 본회에서 출석한 자여야 하며 지도목사의 자문을 받아 신임 회장단에서 임명할 수 있다. 단, 2년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는 지도목사 추천에 의하여 가능하다.
3. 사역국 팀장은 세례교인으로 1년 이상 본회 출석한 자로 지도목사 재량 또는 지도목사의 자문을 받아 팀 내에서 임명할 수 있다.
4. 엘더 및 양육리더는 세례교인으로서 1년 이상 본회에서 출석한 자여야 하며 신앙의 본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합당한 자로서 지도목사의 재량에 의해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각 부서 연중 계획 및 예산안 보고받고 결제한다.

② 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리한다.

③ 총무 : 본회 행사 및 각 부서의 제반업무를 유기적 총괄 및 지원한다.

④ 서기 : 본회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 교적부 및 출석상황을 관리한다.

⑤ 회계 : 본회 금전출납에 관한 재정을 담당하며, 각 팀 및 소그룹에 회계를 둘 수 있다.

제11조(사역국의 임무) 본회의 사역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예배팀 : 예배와 찬양에 관련된 제반 업무 및 부속팀(찬양팀, 찬양대 등)을 담당하며 팀장과 부팀장 및 팀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도팀 : 국내, 국외 선교지원 및 선교기도, 전도 및 선교 활동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팀장과 부팀장 부원을 둘 수 있다.

- ③ 미디어팀 : 본회의 예배진행, 커뮤니티 관리와 영상관련, 이미지 디자인 등의 사역을 담당하며 팀장과 부팀장, 부원을 둘 수 있다.
- ④ 새가족팀 : 본회에 처음 등록한 새가족의 환영 및 양육의 역할을 담당하며 1,2청 각 1명의 팀장과 부원을 둘 수 있다.
- ⑤ 중보기도팀 : 본회의 회원과 예배 등 본 회와 관련한 사역들을 위한 기도회를 주관하는 일을 담당하며 팀장과 부팀장, 부원을 둘 수 있다.
- ⑥ 양육훈련팀 : 청년부의 교육 및 훈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1,2청 각 1명의 팀장과 부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양육국의 임무) 본회의 양육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엘디 : 지도목사의 지도 아래 새가족 사역과 양육리더를 지원하며 소그룹 및 회원관리를 담당한다.
- ② 양육리더 : 지도목사의 지도 아래 소그룹모임을 인도하며 새가족을 섬기며, 회원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섬긴다.

제13조(임.역원, 사역국의 임기)

- ① 본회 행정국의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명년 11월 30일까지로 하며 재임이 가능하다.
- ② 본회 사역국 팀장/부팀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재임이 가능하다.

제13-1조(인수인계)

- ① 인수인계는 임무의 임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제5장 선 거

제14조(회장단 선거)

- ① 회장
 - 1. 회장은 세례교인으로서 본회 당해 정기총회로부터 2년 이상 본회에 출석한자여야 한다.
 - 2. 회장후보는 공천위원회가 합의하여 추천한다.
 - 3. 회장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로서 정기총회 임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4. 투표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단일 후보 시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부결 처리 후 재공천 한다. 복수 후보 시에는 2차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 5. 재공천 시에는 회장단 선거 부결 후 1개월 이내에 임시 총회를 통해 재선거 한다.
- ② 부회장
 - 1. 부회장은 세례교인으로 당해 정기총회로부터 2년 이상 본회에 출석한 자여야 한다.
 - 2. 부회장은 공천위원회가 합의하여 추천한다. 다만 의결방법은 ①항을 준용한다.
 - 3. 회장단의 결위 시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1),2)항에 준하여 선정하고 그 외의 인원에 대한 결위 시는 임원단에서 선정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공천위원회)

- ① 구성 : 공천위원회는 지도위원의 자문을 받아 임원회에서 회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1. 공천위원장은 당해 연도 회장단이 지도위원의 자문을 받아 임명한다.
 - 2. 공천위원은 위원장과 당해 연도 회장단이 당해 정기 총회로 부터 2년 이상 출석자에 한해서 협의해서 임명한다.
 - 3. 활동기간 : 정기총회 5주 전에 전 회원에게 통보하고 활동한다.
 - 4. 공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위원은 즉시 위원 중에서 대리자를 선출하여 위원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공천위원장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2,3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공천위원회 내에서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6장 회 의

제16조(회의 종류) 본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와 기타 회의를 갖는다.

- ①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고 당해 연도의 10월 마지막 주일에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단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및 회의방법)

- ①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의 정족수는 최근 6개월 평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한다.
- ② 정기 및 임시 총회는 임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의 발의 및 의결권자의 기준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④ 의결정족수 미달 시 회의는 해산하며, 필요시 회장단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으로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제18조(의결사항)

- ① 정기총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의결한다.
 - 1.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 2. 회장단 개편
 - 3. 회칙개정 및 수정
 - 4. 기타 안건
 - 가. 임시총회에는 전항에 준하여 통제한 사항만 의결한다.
 - 나. 기타 회의 시는 본회의 목적 수행상 필요한 안건 및 기타 사항을 의결한다.

제7장 사 업

제19조(사업)

본회는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 ① 회원 친교와 신앙향상을 위한 사업
- ② 교회와 본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각종 부대사업
- ③ 선교사업 및 구제사업

제8장 재 정

제22조(회비)

본회 재정은 회비와 당회보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청년회 회비
- ② 선교회비
- ③ 회비는 목적 외 용도로 전용될 수 없다

제23조(재정)

- ① 본회 모든 재정은 해당 금융기관에 '회'의 명칭 또는 '회장명'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예치한 통장은 회계가 관리하고, 지도장로, 지도목사와 회장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 ③ 본회 재정의 수입 및 지출은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지도장로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결산보고) 재정의 총 결산보고는 12월 마지막 주에 하며 현 재정 상황은 다니엘청년부 월례 회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제9장 회칙개정

제26조(발의)

- ① 본회 회칙개정은 회장단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발의로 한다.
- ② 발의 안은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 1주 전에 전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27조(회칙개정위원회)

필요한 경우 지도자그룹의 자문을 받거나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공청회) 회칙개정 위원회는 임시총회나 정기총회 2주전에 공청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다.

제29조(의결) 개정된 발의안을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전 회원의 가부를 물어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본 교회 안에 둔다.

제2조(관례)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3조(효력) 본회 회칙은 당해 1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회 칙 약 사

1. 2013. 11. 회칙개정 (제3장 제8조 2항 총무 : '2명' 이상을 '1명' 이상으로 개정)

2. 2013. 11. 회칙신설 (제3장 제8조 6항 마. 다만,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자도 목사님 추천에 의하여 가능하다.)

3. 2013. 11. 회칙개정 (제3장 제10조 1항. 부속 팀에 속한 팀이름 '찬양팀, 중보기도팀' 추가)

4. 2013. 11. 회칙개정 (제3장 제10조 2항. '선교부장이' 추가, '사역 팀으로 구성한다'를 '사역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로 개정)

5. 2013. 11. 회칙개정 (제3장 제11조 '팀장'을 '팀장 및 간사'로 개정)

6. 2013. 11. 회칙개정 (제3장 제12조 '팀장, 리더의 임기'를 '임역원, 팀장, 리더의 임기'로 개정)

7. 2013. 11. 회칙개정 (제7장 제21조 3항. '납입한다'를 '납입할 수 있다'로 개정)

8. 2013. 11. 회칙일부삭제 (제7장 제23조 밑 삭제)

9. 2014. 11. 회칙개정 (제2장 제5조 '1회 이상 출석한자로 한다.'를 '4회 이상 출석한자로 한다.로 개정)

10. 2014. 11. 회칙신설 (제3장 제9조 1)회장. 각 부서 연중 계획 및 예산안 보고받고 결재한다.

11. 2014. 11. 회칙개정 (제3장 제9조 3)총무. '유기적으로 총괄한다.'를 '유기적 총괄 및 지원한다.'로 개정)

12. 2014. 11. 회칙신설 (제3장 제10조 1)예배찬양부장. 제반 업무라 함은 본회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외부 강사 및 전반적인 예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동원하는 업무를 뜻한다.)

13. 2014. 11. 회칙신설 (제3장 제10조 4)문서부장. 각종 행사 사진 파일과 동영상 보관을 담당한다.)

14. 2014. 11. 회칙신설 (제3장 제10조 5)교육부장. GBS, FBS, 새가족 등 셀 구성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한다.)

15. 2014. 11. 회칙신설 (제3장 제10조 6)미디어부장. 각종 행사의 매체를 통한 촬영을 담당한다.)

16. 2014. 11. 회칙신설 (제4장 제14조 1)구성 가. 공천위원장은 당해 연도 회장단이 지도위원의

자문을 받아 임명한다.

나. 공천위원은 위원장과 당해 연도 회장단이 당해 정기 총회로 부터 2년 이상 출석자에 한해서 협의해서 임명한다.)

17. 2014. 11. 회칙신설 (제4장 제14조 3) 공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위원은 즉시 위원 중에서 대리자를 선출하여 위원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공천위원장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2,3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공천위원회 내에서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18. 2014. 11. 회칙신설 (제8장 제26조 1)구성 가. 회칙개정위원장은 당해 연도 회장단이 지도위원의 자문을 받아 임명한다.

나. 회칙개정위원은 위원장과 당해 연도 회장단이 당해 정기 총회로 부터 2년 이상 출석자에 한해서 협의해서 임명한다.)

19. 2015. 11. 회칙개정 (제2장 제5조 '셀 모임'을 '소그룹 모임'으로 개정, '팀'을 '부속팀 및 양육소그룹 모임'으로 개정)

20. 2015. 11. 회칙신설 (제3장 제8조 4) 가. 팀장은 각 부속팀 및 양육리더의 장을 의미한다.
나. 양육리더는 양육소그룹을 인도하는 자이다.)

21. 2015. 11. 회칙개정 (제3장 제8조 6) 라. '리더'를 '팀장'으로 개정, '회장단이 협의하여 임명한다.'를 '자문을 받아 팀 내에서 결정한다.'로 개정)

22. 2015. 11. 회칙개정 (제3장 제8조 6) 마. '팀장'을 '양육팀장'으로 개정, '리더'를 '양육리더'로 개정)

23. 2015. 11. 회칙개정 (제3장 제9조 5) '각팀'을 '각 팀 및 소그룹'으로 개정)

24. 2015. 11. 회칙개정 (제3장 제11조 '팀장 및 간사와 리더의 임무'를 '양육팀장 및 간사와 양육리더의 임무'로 개정)

25. 2015. 11. 회칙개정 (제3장 제12조 '그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한다.'를 '1년으로 한다.'로 개정)

26. 2015. 11. 회칙신설 (제3장 제12조 단. 지도목사와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27. 2015. 11. 회칙개정 (제5장 제15조 3) '4/4분기로 하되 마지막(→3/4) 분기회는 정기총회로 대체한다.'를 '4/4분기로 한다.'로 개정)

28. 2015. 11. 회칙신설 (제5장 제15조 3) 가. 1/4분기는 전년 12월을 포함한 3월까지로 하고, 4/4분기는 10월, 11월로 한다.)

29. 2017. 11. 회칙개정 (제1장 제1조 "청년사역위원회 내 '20세부터 26세 이하'는 '1청년회', '27세 이상'은 '2청년회'라 칭한다" 로 개정)

30. 2017. 11. 회칙개정

(제3장 제8조 2) '임원

1청년회 회장 : 1명, 2청년회 회장 : 1명
1청년회 부회장: : 1명, 2청년회 부회장 : 1명
1청년회 총무 : 1명 이상, 2청년회 총무 : 1명 이상
1청년회 서기 : 1명 이상, 2청년회 서기 : 1명 이상
1청년회 회계 : 1명 이상, 2청년회 회계 : 1명 이상' 로 개정)

31. 2017. 11. 회칙개정 (제4장 제13조 1) 가. '회장은 세례교인으로서 본회 당해 정기총회로부터 2년 이상 본회에서 출석한자여야 한다.' 로 개정)

32. 2019. 11. 청년사역위원회 1청년부,2청년부 통합에 의한 회칙 개정

33. 2019. 11. 회칙개정 (제5장 제14조 2) 부회장 가. '부회장은 세례교인으로 당해 정기총회로부터 2년 이상 본회에 출석한 자여야 한다.' 로 개정)